

기안용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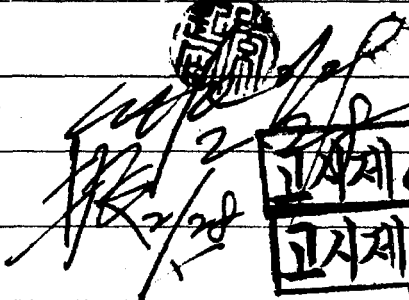


분류기호 서건과 410
문기호 2017

(전화번호 254)

전결규정 4조 30호
부시항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관리과	
보존년한	1968. 3. 7	권재호	제2부시항
		기안일자	결재
		68. 2. 28	재

3. 4
재

보조기관	건설국	   
	관리과	
	공리관리계	

고시제 17호
고시제 18호

협조	법무관	총무과
경수참	유신조	각안함조

제 목 : 도로수위라 부담금 부과총액 결령

"제1안" 내부결재

1. 68년도 영등로구내담금 과금공사가 되어 별첨과 같이 부과료를 송부하여 별첨 리포지와 같이 도로수위라 부담금 부과총액 결령 하고 별첨과 같이 각각 신청코리 하오나 26 라가 하여 주리기 바랍니다.

2. 공4명 및 내역

공4명	부과총액결령액	총액사정기분액	부과금
-----	---------	---------	-----

노량련역 - 한쿠모방간 도로 신원공사	359,738 원	7,194,773 원	$\frac{5}{100}$
시흥철리미정철리 마구도로 확장공사	1,615,395 원	8,076,976 원	$\frac{20}{100}$
계	1,975,133 원	15,271,749 원	

"제2안" 고시안 (별리와 같음)

"제3안"

수신: 영등포구청장

제목: 도로수위라 부담금 부과리시

1. 서양토목 410-2114 (68.2.20) 및 서양토목 410-2115 (68.2.20) 와 관련임

2. 별리조서와 같이 부담금 흥부결정고시를 하였으나 수신 부과배분하고 결과보고할것이며 고시문은 해당 등나무소 제21칸에 제21조리할것

3. 내역

공나 명	부과흥부
노량련역 - 한쿠모방간 도로신원공사	359,738 원
시흥철리미정철리 마구도로 확장공사	1,615,395 원
첨부; 1. 부과흥부 결정조서	각 1 매
2. 고시문 첨부본	각 1 매

제4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구청

제목: 시보 제재의리

별리와 같이 도로수위라 부담금 부과흥부를 결정고시하였으나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시보 2매. 끝.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조서

영등포구

공종 도부의신설 확장조장 공사명 또는시공보선명
 하수도복개 시흥철거비확차의 영구
 공사내역 B=10 배 도로확장공사
 L=1020m (시공에의 철거비확차)

착공	준공	공사비내역						
년월일	년월일	순공사비	특수시설비	용지대수비	기타보상금	사무비	기타	계
67.	67.							
3.13	8.29	5,678,916		2,599,100				

제 원			부담금 총액 결정내역		
시비	국비	기부금	총액산정기본비	부과율	총액결정액
8,076,916			8,076,916	20/100	1,615,395

부담금 부과내역			비 고
감액	년제액	부과액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총액 결정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 1. 공사시공 토건 **시흥철거민 권취지 입구 도로확장공사**
- 2. 공사의 종류 **확장**
- 3. 착공 년월일 **67. 3. 13.**
- 4. 준공 년월일 **67. 8. 29.**
- 5. 총공사비 **8,076,976 원**
- 6. 부담금 총액 **1,614,394 원**
-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인시부과. 끝.**

1968. 3. 7

1968. 3. 7

서울특별시 장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조서

영등포구

공종 도로의신설 확장포장
 하수도복개
 공사내역 B=15m
 L=190m

공사명 또는시공로선명
 노량진역보-안국역간도로
 신설공사
 (노량진역주유소~노량진역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공사비내역					기타	계
		순공사비	특수시설비	용지매수비	기타보상금	사무비		
67. 3.9	67. 7.31	2468683		4726090				

제 원			부담금 총액 결정내역		
시비	국비	기부금	총액산정기본비	부과율	총액결정액
2194773			2194773	$\frac{5}{100}$	359738

부담금 부과내역			비 고
감액	면제액	부과액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총액 결정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 1. 공사사공 토선 노량진부설 - 한류문방간 도로신설공사
- 2. 공사의 종류 신 설
- 3. 착공 년월일 67. 3. 9.
- 4. 준공 년월일 67. 7. 31.
- 5. 총공사비 2194.773 킶
- 6. 부담금 총액 357.738 킶
- 7. 부과구역 별도 매탕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매구역 일몰
-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임시부과. 끝.

1968. 3 ,

서울특별시장